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
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'지방자치법' 제35조 '겸직 등 금지'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열거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제5항의 지방공공 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함

3. 주요내용

○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 제3항 제2호 위원회 구성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과 성주군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운영위원회 중 군의원 1명을 삭제하고자 함.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

5.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제35조 겸직 등 금지에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열거하였고 특히 제5항은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'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'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위촉직 위원중 '지방의회의원'과 성주군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운영위원회 중 '군의원 1명'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거규정인 상위법의 개정과 기획감사실의 검토를 거친 후 개별 부서별 조례 일부개정조항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